

[별표 1] <개정 1986.11.11>

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·시설·설비기준(제4조의2 관련)

| 번호 | 종 류 | 인 력 기 준 | 시설·설비기준 | 안전관리대행 대 상 업 종 |
|----|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공통사항 | | 1. 사무실 2. 장비실 | |
| 2 | 일반안전 관리대행 기관 | 1. 안전관리대행사업장 20개소 또는 안전관리대행사업장의 근로자 2,000인당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상 가. 안전관리기술사(기계안전) 나. 산업안전기사1급으로 산업안전실무경력 5년이상인 자 다. 산업안전기사2급으로 산업안전실무경력 10년이상인 자 라.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의 산업안전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 산업안전실무경력 5년이상인 자 2. 산업안전기사2급 또는 기계기사2급 1인이상 | 1. 회전속도측정기 2. 비파괴검사기 3. 표준온도계 4. 표준압력계 5. 가스농도측정기 6. 산소경보기 7. 가연성가스검지관 8. 절연저항측정기 9.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0. 계전기기시험기 11. 만능회로측정기 12. 재료강도시험기 13. 진동측정기 | 모든 산업 (건설업을 제외한다) |
| 3 | 건설안전 관리대행 기관 | 1. 안전관리 대상사업장 20개소 또는 안전관리대행사업장의 근로자 2,000인당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상 가. 산업안전관리기술사 (건설안전) 나. 건설안전기사1급으로 건설안전실무경력 5년이상인 자 다. 건설안전기사 2급으로 건설안전실무경력 | 번호2 (일반안전관리 대행기관)의 12호 및 13호에 정하는 기계·기구 | 건 설 업 |

| | | | | |
|--|--|--|--|--|
| | | <p>10년이상인 자</p> <p>라.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 건설안전실무경력 5년이상인 자</p> <p>2. 산업안전기사2급 또는 기계기사2급 1인이상</p> | | |
|--|--|--|--|--|